

국내 학술교류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9. 03. 08.

담당 : 교학팀(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범위)	제3조(정의)	제4조(지원자격)
제5조(수학신청 및 허가)	제6조(등록)	제7조(교과목 이수 및 범위)	제8조(수학신청 변경)
제9조(취득학점)	제10조(성적평가 및 학점인정)	제11조(신청자격)	제12조(수학신청 및 허가)
제13조(등록)	제14조(교과목 이수 및 범위)	제15조(수학신청 변경 및 취소)	제16조(취득학점)
제17조(성적처리)			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44조(학점인정)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와 국내대학교(이하 “타교”이라 한다)간에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양 대학교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(이하 “학점교류”이라 한다)에 따라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“본교학생”은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소속 학생, “타교학생”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을 말한다.

제2장 본교 학생의 타교 수학

제4조(지원자격) ① 타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단, 사 이버 학점교류는 4호의 자격을 두지 않는다.

1. 1학기 이상 수료한 자

2.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다.
 3.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4. 총 평균평점 2.7이상인 자
 5.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② 휴학생은 계절학기에 한해 타 대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하다.

제5조(수학신청 및 허가) 타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서(별지서식1)를 작성한 후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팀에 제출하고, 수학 허가는 교학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등록) 타 대학교 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본 대학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타 대학교에 납부한다.

②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.

제7조(교과목 이수 및 범위) ① 교직 교과목은 타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으며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.

③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수 없다.

제8조(수학신청 변경) 수학신청 변경(취소 포함)은 타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(취득학점) ① 본교학생이 타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24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매 학기 타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 단, 군 복무중인 자가 학점교류할 경우 3학점 이내로 한다.

③ 타 대학교에서 수강신청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한

제10조(성적평가 및 학점인정) ① 타 대학교에서 수학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(학점)은 본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며, 해당 학기 평점 평균에 산입한다.

③ 타 대학교에서 취득하고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적부 및 성적표에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사실을 표시한다.

제3장 타교 학생의 본교 수학

제11조(신청자격) 법령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한 타교학생으로서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소속 대학의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(계절학기는 휴학생도 가능)
2. 소속 대학의 수학 허가를 받은 자

제12조(수학신청 및 허가) ① 소속 대학은 학점교류생의 명단을 정해진 기한 내 본 대학교에 통보하여

야 한다.

② 본 대학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학점교류생의 수학허가를 교학처장이 결정한다.

제13조(등록) ① 타교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소속 대학에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, 계절학기의 등록은 본교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계절학기 수학을 취소할 경우 본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.

제14조(교과목 이수 및 범위) 타교학생은 본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본교에서 학점교류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및 과목별 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수학신청 변경 및 취소) ① 수학신청 변경(취소 포함)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② 수학신청 변경은 본교의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가능하다.

③ 수학신청 취소는 본교의 수강신청 취소기간까지 가능하나 취소로 인해 폐강이 예상될 경우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대학의 학적변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수학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수학허가를 받은 타교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6조(취득학점) 타대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르나 학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정규학기는 최대 21학점까지,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.

제17조(성적처리) ①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본교의 규정에 따르며, 그 결과를 타교학생에게 통보한다.

② 타교학생은 성적확인 후 성적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소속 대학에 성적을 통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1) **학점교류 수강신청서**

성 명				학 번	
학 과 (전 공)				연락처	
생년월일		성 별		이메일	
학점교류 신청학기	학년도	학기		이수학점 / 평균평점	/

<수강신청과목>				
교류대학명	신청과목명	학수번호 (강좌번호)	학점	담당교수명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사항 고지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목적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학점교류 수강신청 업무 처리	성명, 학번, 학과(전공), 연락처, 생년월일, 성별, 이메일, 학점교류 신청학기, 이수학점 / 평균평점, 수강신청과목	고등교육법 제22조

위와 같이 학점교류 수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학과장 : (인)